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5970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8 판결

전문

원고A

피고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양성우

2. (망 B의 상속인) C

3. (망 B의 상속인) D

4. (망 B의 상속인) E

5. (망 B의 상속인) F

6. (망 B의 상속인) G

7. (망 B의 상속인) H

8. (망 B의 상속인) I

9. (망 B의 상속인) J

10. (망 K의 상속인) L

변론 종결 2018. 11. 28.

판결 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 E, J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1379m²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6, 7, 18, 19, 12, 1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1m²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2018. 4. 6.자, 피고 J에 대하여는 2018. 5. 15.자 각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1379m²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6, 7, 18, 19, 12, 1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1m²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1379m²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6, 7, 18, 19, 12, 1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1m²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6.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평택시 M 대 1067평 토지가 M 대 512평과 N 대 309평, ○ 대 246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M 대 512평 토지가 M 대 1379m²와 P 대 95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N 대 309평은 N 대 125평과 Q 대 184평으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토지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관계

이 사건 청구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토지이고, M 대 1379m²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6, 7, 18, 19, 12, 1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1m²(이하 '이 사건 청구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구분소유 대상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서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를 구하고, 그 소장부분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토지에 관하여 위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토지에 관하여 2014. 6.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와 피고들의 구분소유 대상으로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토지에 대한 점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결국 자주 점유를 전제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E,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이도식

별지